

의안번호	2215198
의 퇴 인	위성곤의원
회 답 일	2026.3.24.
추 계 번호	25D7014

국가미래전략기본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국가미래위원회 구성·운영 시, 회의참석수당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14억 4,000만원 (연평균 2억 8,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명, 회,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전체회의	144	144	144	144	144	720	144
분과위원회	144	144	144	144	144	720	144
합계	288	288	288	288	288	1,440	28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 (국가미래보고서의 수립·제출 등)	대통령은 임기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국가의 장기 운영환경에 관한 분석과 이에 따른 전략을 정리한 국 가미래보고서(이하 “미래보고서”라 한다)를 국무회 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제1항) 미래보고서는 작성연도 기준으로 20년 이후의 장기 적 관점으로 작성함(제2항) 미래보고서에는 국내외 여건 및 장기 구조변화에 관 한 미래환경 전망·운영환경 분석, 대한민국의 미래 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기술적·경제적·환경적 및 정책적(이하 “분야별”이라 한다) 변화 요인 및 그 에 따른 불확실성 요소와 그 대안 방향, 분야별 위험 요인과 기회요인의 식별 및 핵심 논점, 미래 환경의 복수 시나리오 및 그 영향분석, 미래세대와 지속 가능 한 발전을 위한 국가의 역할, 장기과제(작성 연도 기 준 20년 후의 환경에 대한 국가 비전, 중장기 목표, 분야별 기본방향, 재정·입법·규제의 기본방향), 단기과제(대통령 임기 내 추진할 과제 및 주요 추진일 정, 재정·입법·규제의 추진방향과 부처별 역할· 책임), 국민 참여 절차 계획 및 결과 반영에 관한 사 항, 그 밖에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포함하는 사항을 포함함(제3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6조 (참여 보장)	정부는 미래보고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절차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절차의 일정과 방법을 사전에 공표하여야 함(제1항) 정부는 제1항의 절차에서 접수된 의견을 검토·분류하여 반영 여부 및 사유를 정리하여 미래보고서에 반영하고, 미래보고서 제출 시 그 요지와 반영 내용을 함께 공개하여야 함(제2항) 정부는 세대·지역·계층 등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함(제3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참여절차, 공표 및 운영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3	안 제11조 (국가미래위원회)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전략 수립에 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1항)	의무규정
4	안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세대·계층을 고려하여 구성함(제1항)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6항)	의무규정
5	안 제14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함(제2항)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함(제3항) 임시회의는 대통령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함	의무규정
6	안 제15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경제·사회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1항)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7	안 제16조 (조사·연구 및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8	안 제1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통령비서실의 국가 중장기전략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함	의무규정
9	안 제18조 (경비 지급)	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 (국가미래보고서의 수립·제출 등)	×	국가미래보고서의 수립과 관련하여, 전문가회의, 정책연구용역 추진, 인력채용, 보고서의 인쇄 등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 보고서의 수립 방법에 대해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2	안 제6조 (참여 보장)	×	국민참여 규모, 형태, 기간, 횟수 등과 관련하여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3	안 제11조 (국가미래위원회)	○	—
4	안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등)	○	—
5	안 제14조 (회의)	○	—
6	안 제15조 (분과위원회)	○	—
7	안 제16조 (조사·연구 및 협조요청)	×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 의뢰 시, 전문가회의나 정책연구용역 형식으로 수행할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 전문적인 조사·연구의뢰의 형식, 횟수, 규모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8	안 제17조 (간사)	—	대통령비서실의 유관업무를 담당하는 수석비서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함
9	안 제18조 (경비 지급)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에 따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전략 수립과 관련하여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국가미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국가미래보고서를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할 경우, 국가미래위원회의 구성·운영, 전문적인 조사·연구 의뢰 국민참여절차 등을 위해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됨
- 국가미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구성은 현 대통령비서실 조직을 참고하

고, 운영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함

- 제정안은 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경제·사회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계에서는 위원회 위원을 20인으로 가정함
-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은 대통령비서실의 국가 중장기전략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비서실의 유관업무를 담당하는 수석비서관이 수행¹⁾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에서 제외함
- 분과위원회는 현 유관업무를 담당하는 수석비서관 아래 국가AI정책비서관, 과학기술연구비서관, 인구정책비서관, 기후에너지환경비서관 등 4명의 비서관이 있는 것을 고려하여, 4개 분과위원회로 가정함
- 회의개최횟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하여, 전체회의와 본회의 각각 월 2회로 가정함
 - － 규제개혁위원회의 경우, 위원 정수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3년간 회의개최건수는 아래와 같음

[표 2]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개최 횟수

(단위: 회)

구 분		2023	2024	2025	합계	월평균
본회의		25	20	22	67	1.9
분과위원회	경제분과	28	36	29	93	2.6
	행정사회분과	26	30	34	90	2.5
합계		79	86	85	250	2.3
		2.2	2.4	2.4	2.3	—

자료: 국무조정실

- 회의참석수당 단가는 참석수당 20만원, 안전검토비 10만원 등 총 30만원으로 가정함
- 제정안은 미래보고서 수립 과정에 세대·지역·계층을 고려한 국민참여절차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참여절차, 공표 및 운영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국민참여 규모, 형태, 기간, 횟수 등과 관련하여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

1) 제정안과 관련하여 현 대통령비서실의 유관업무는 AI미래기획수석이 담당하고 있음

란하여 추계에서 제외함

- 통상적으로 국가적 주요의제와 관련한 국민참여는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되는 공론화위원회와 대규모 시민대표단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음
- 공론화위원회는 약 7~15명 규모로 구성·운영되어 대규모 시민대표단이 논의할 의제 및 숙의과정 등을 진행하고, 권고사항을 도출함
 - － (사례) 연금개혁 공론화과정의 경우, 공론화위원회는 의제범위를 설정하고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의제숙의단을 구성하여 의제를 시민참여형 공론화에 부칠 수 있는 형태로 1단계 숙의를 통해 구체화한 후, 500명 규모의 시민대표단을 구성하여 학습·토의과정을 통해 공론을 형성
- 다만, 대규모 시민대표단을 통해 의견수렴을 할 경우, 시민대표단의 규모, 활동기간, 형태, 회의개최횟수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됨
 - － 시민대표단 규모가 약 500명 규모로 운영된 경우, 공론화용역비는 약 18억원~32억원 규모로 다양함
- 또한, 국가미래보고서의 수립 등을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거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 의뢰와 관련하여 전문가회의나 정책연구용역 형식으로 수행할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나, 전문적인 조사·연구의뢰 형식, 횟수, 규모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하여 추계에서 제외함
- 위원회가 사용할 사무실 관련 비용은 대통령실 유희시설을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에서 제외함
- 제정안 부칙은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국가미래위원회 구성·운영

- 제정안에 따라 국가미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회의참석수당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발생
 - 제정안에 따라 위원회는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4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며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가 각각 월 2회씩 개최되고 회의참석수당 단가는 30만원(참석수당 20만원, 안전검토비 10만원)으로 가정함
- 추계기간의 국가미래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회의참석수당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14억 4,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국가미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추계: 2027~2031년

(단위: 명, 회,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전체회의	위원 수	20	20	20	20	20	
	회의개최횟수	24	24	24	24	24	
	회의참석수당	0.3	0.3	0.3	0.3	0.3	
	추가재정소요	144	144	144	144	144	720
분과위원회	위원회 수	4	4	4	4	4	
	위원 수	5	5	5	5	5	
	회의개최횟수	24	24	24	24	24	
	회의참석수당	0.3	0.3	0.3	0.3	0.3	
	추가재정소요	144	144	144	144	144	720
추가재정소요 합계		288	288	288	288	288	1,44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추계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국가미래위원회 구성·운영 시, 회의참석수당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14억 4,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재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명, 회,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전체회의	144	144	144	144	144	720
분과위원회	144	144	144	144	144	720
합계	288	288	288	288	288	1,44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국가미래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을 추계하였으며, 국가미래보고서의 수립을 위한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의뢰, 국민참여절차 추진 등과 관련한 비용은 추계에서 제외된 결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